

자율과 경쟁은 WTO시대의 유일한 생존 전략

최 중 찬 /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새로운 도전과 기회

지난해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7년 여를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종결짓게 됨으로써 전후 세계 교역 질서를 이끌어오던 GATT體制는 막을 내리고, 금년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소위 WTO體制라는 새로운 국제 경쟁의 틀이 짜여진 것이다.

이로써 상품 교역 뿐 아니라 자본·기술·인력과 같은 생산요소 및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벽들이 한층 낮아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는 국경없는 無限競爭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모든 농산물, 심지어 쌀까지 예외없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모두 개방되고 또 정부 보조도 줄여야 한다. 건설이나 금융산업에서도 외국인 회사가 차별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와 같이 전에 없던 엄청난 도전의 파도가 밀려 오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이제부터 정부의 保護 幕이나 支援이라는 방패없이 세계 유수기업과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여야 한다. 정부 입장에

서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때까지 고유한 국내 정책이라고 여겨지던 분야까지도 국제 규범과 협약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서비스·생산 요소의 이동으로 내외 시장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져 한 나라의 독자적인 巨視政策의 유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WTO體制의 출범은 기업가들에게는 한정된 國內市場의 울타리를 벗어나 보다 넓은 世界市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제품의 디자인, 생산 자금 조달, 판매 등을 전세계를 상대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능력있는 기업에게는 無限한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제 WTO 출범을 계기로 더욱 심화된 세계경제 질서의 새로운 도전을 우리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의 선택

WTO出帆에 따른 자유무역의 이익을 최대한 향유하고 우리의

새로운 발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자유롭고 선진화된 경쟁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때까지의 정부의 지시와 통제나 정부의 직접 보호 지원에서 벗어나 모든 경제 주체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경쟁이 창달될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自律과 競爭이 새로운 경제 윤리로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자율은 민간의 자발적인 창의를 가져오고 경쟁은 無限競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自生力을 키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과 경쟁은 WTO 시대의 유일한 生存戰略이 된다.

이제 새로운 경제 윤리나 生存戰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행동 양식이 필요하게 된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운영의 틀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민간을 그대로 끌고 가려는 방식은 정부가 아무리 하고싶어도, 민간이 아무리 정부에 기대하더라도, 이제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中央政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과감히 移讓해야 한다. 주민 복지·지역 경제 개발, 교통 문제 등은 각 지방마다의 특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간의 自律競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의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연말 정부 조직의 대폭적인 개편은 과거 開發年代의 經濟企劃院을 중심으로 기획과 예산을 집중하고 각 부처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정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아래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조직 내에서도 관료적 형태와 割據主義를 타파하고 자율성과 창의의 발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함이다. 물론 放任을 바탕으로 한 자율이 아닌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정책 운용이 아울러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은 자명한 명제이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축소

기업의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핵심 과제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하여 정부의 規制機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

를 대폭 정비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이때까지의 업계의 요구 사항이나 절차 간소화 위주의 규제 완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적 성격이 강한 규제에 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진입 규제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화로 외국 우수기업의 제품이 자유롭게 수입되는 여건 하에서 신규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이제 논리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시 사전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신규 규제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편의적인 규제 신설시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반드시 첨부케 하고,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 규제의 비용 개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

특정 인·허가 등 규제사항은 시한부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규제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 공해 방지나 산업 안전 등 경제·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의 경우도 그 내용이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 소지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하버드대학의 슬라이퍼(Shleifer) 교수와 비시니(Visny) 교수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부패는 언제나 불합리한 규제에

“

기업의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핵심 과제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서 비롯되므로 부패 구조를 개선하는 최선책은 경쟁을 도입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민간 기업의 신규업종 진입이나 생산 및 투자 활동에 대한 규제는 공정경쟁의 저해 뿐 아니라 기득권 보호라는 또다른 부패 행태를 가져 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지원 제도의 개편

WTO體制下에서는 경쟁 제한적인 산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단체수의계약 제도 등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철폐 내지는 완화하여야 하므로 우리의 산업지원 제도도 개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보호·지원 위주의 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출이나 特定産業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금융·세제 지원, 特定業種育成을 위한 진입제한 등의 조치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대신 장기 발전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인력 개발·입지지원 등 양질의 저렴한 생산요소가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적 정책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여건 변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보호·지원 방식은 불가능하므로 창업 지원·정보 제

공·직업 훈련 등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정보화 추진, 양질의 정부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이때까지 가장 낙후된 부문으로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금융산업이다. 그 원인은 우리의 금융산업이 公益性和 정부의 산업 정책 지원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해 각종 규제와 정부의 보호로 경쟁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는데 있다.

이제 UR협상의 타결로 금융산업의 국제화와 금융시장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비하는 길은 빠른 시일내에 국내금융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자유화를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을 경쟁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완성하는 일이다.

금리자유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이 경쟁을 하므로서 효율성도 제고되고 그로 인하여 자금의 媒介機能도 원활해 지게 될 것이다. 최근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기관의 경쟁이 촉진되고 그 결과 경영 개선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경쟁이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라 하겠다. 연내에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금리 가운데 요구불 예금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신금리와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의 자유화를 마무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 보험·증권 등 금융기관 업무 영역의 지나친 분리 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유니버살 बैं킹」 추세에 맞춰 업무 영역의 진입 규제도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생산성 제고와 민영화 촉진

개방화 시대에 시장 기능이 제고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기능을 과감하게 民間에게 移讓하고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운송, 경비 용역 등은 민간 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정부 내에서도 인센티브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연구기관도 계약제나 성과급제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사면에서도 年功序列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고 외부 인사의 채용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경영하거나 독점적인 지위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드러나지 않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예가 많다.

이를 정부의 감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과감히

민영화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담배인삼공사와 같이 현재 독점적인 공기업은 민영화시 반드시 경쟁체제로 전환시켜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 제도의 강화를 통한 경쟁 촉진

자율과 개방이 확대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업 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진 반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효율적인 시장기능을 저해할 가능성도 또한 커질 것이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서 대부분의 부처들이 축소 조정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조사국을 신설하는 한편,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케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 취지도 **談合**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등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불공정 **下都給去來** 행위나 **入札談合** 등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방의 진전으로 외국 기업과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즉 국내 대기업이라고

특별히 규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업 활동에 대한 사전적·개별적 규제는 최대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업의 외연적 확대는 경제력의 집중이라는 또 다른 폐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총량적이고 사후적인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30대 기업 집단의 출자총액 한도를 40%에서 25%로 인하하였고, 앞으로도 계열기업간 상호채무 보증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그룹 중심의 선단식 경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계열사 상호간의 부당한 内部去來 행위를 시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不法下都給**이나 **談合行爲** 등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세계화라는 흐름은 이제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이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세계화를 인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보호막 속으로 안주하려 하는 것은 더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으며, 그것은 경제주체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

“

세계화를 인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보호막 속으로 안주하려 하는 것은 더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으며, 그것은 경제주체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